# 되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15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남인순·박홍근·이재관

박지원 · 김문수 · 이병진

임미애 · 오세희 · 황명선

인요한 · 서영석 · 김 윤

전진숙 • 서미화 • 이훈기

전종덕 • 이재강 • 문금주

박해철 • 이수진 의원

(20일)

## 제안이유

되전증은 전해질 불균형, 산·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, 뇌졸중과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되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,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·교육·결혼·대인관계 등에서 많 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음. 그 결과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 ·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 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뇌전증의 예방·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나. 뇌전증관리체계, 종합계획, 법령 및 제도개선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 전증관리위원회를 둠(안 제6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·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, 뇌전증등록통계사업, 역학조사,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연구사업 및 뇌전증관리사업 지원, 뇌전 증등록통계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

제14조).

바.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·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, 의료비 지원,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, 주간활동·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(안제15부터 제19조까지).

법률 제 호

#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뇌전증의 예방·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·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뇌전증"이란 두부외상, 뇌종양, 뇌졸중, 뇌기형, 뇌염, 해마경화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체 뇌 신경세포가 불안정해 져서 만성적으로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으로 불규칙적인 이상흥분 현상에 의하여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.
- 2. "뇌전증환자"란 전문의로부터 제1호에 따른 뇌전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"뇌전증관리"란 뇌전증의 진단·치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·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

한다.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뇌전증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뇌 전증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제공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의 교육,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복지수준 향상과 뇌전증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뇌전증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뇌전증관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

제5조(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

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뇌전증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
- 2. 뇌전증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
- 3. 뇌전증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
- 4. 뇌전증에 관한 인식개선 및 뇌전증환자의 차별방지를 위한 교육 ·홍보
- 5. 뇌전증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
- 6. 뇌전증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개발
- 7. 뇌전증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
- 8. 뇌전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
- 9. 그 밖에 뇌전증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국가 뇌전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뇌전증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

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및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하여야 한다.
-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) 뇌전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국가뇌전증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
- 2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- 4. 뇌전증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
- 5. 뇌전증관리사업 예산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뇌전증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.
 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
  - 2. 뇌전증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
  - 3. 그 밖에 뇌전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3장 뇌전증관리사업 등

제8조(뇌전증연구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 및 진료기

- 술의 발전을 위하여 뇌전증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"뇌전증연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뇌전증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뇌전증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
- 2. 뇌전증화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
- 3. 뇌전증환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
- 4. 뇌전증환자의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연구
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연구
- ③ 뇌전증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뇌전증등록통계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·관리·조사 사업(이하 "뇌전증등록통계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며,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

를 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역학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·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환자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뇌전증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전증등록통계사업 및 역학조사, 실태조사, 뇌전증지원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1. 뇌전증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
  -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
  - 3.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
  - 4. 그 밖에 뇌전증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

- 제13조(뇌전증지원센터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뇌전증연구사업 및 뇌전증관리사업 지원
  - 2.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지원
  - 3. 뇌전증관리사업에 관련 교육·훈련 및 지원
  - 4. 뇌전증 관련 시설 ·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  - 5. 뇌전증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
  - 6. 뇌전증환자 및 가족의 상담 및 맞춤형 교육
  - 7. 뇌전증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
  - 8. 뇌전증전문진료센터 업무 지원
  - 9. 국내외 뇌전증 관련 기관 간 협력
  - 10. 그 밖에 뇌전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전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뇌전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뇌전증전문진료센터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진 단·치료 및 약물 난치성 뇌전증환자에 대한 수술 등 뇌전증 관련

-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·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 관을 뇌전증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전문진료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전문진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
-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·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취업 및 복지 지원 등

제15조(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게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균등한 취업기회

- 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의료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뇌전증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심리상담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주간활동·돌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와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

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의 영역에서 뇌전증환자에게 필요 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보칙

- 제20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지도·감독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전문진료센터의 사업수행을 지도·감독하며, 뇌전증전문진료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- 제22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뇌전증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24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전증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벌칙

제25조(벌칙)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